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제7-6조의2 제9항 관련)

1. 투자대상자산별 위험평가액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단일 옵션 (매수/매도 풋 및 콜)	
채권옵션	계약의 명목가치 × 기초자산의 시가 × 델타
통화옵션	외국통화 계약의 명목가치 × 델타
주식옵션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주식의 시가 × 델타
지수옵션	계약의 명목가치(또는 포인트) × 인덱스 수준 × 델타
금리옵션	계약의 명목가치 × 델타
보증 및 권리	주식/채권 수 ×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 델타
선물	
채권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최저가격 인도 조건의 준거채권 시가
통화선물	계약의 수 × 계약의 명목단위
주식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자산인 양도성 증권 시가
지수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인덱스 수준
금리선물	계약의 수 × 계약의 명목단위
상품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자산의 시가
스왑	
차액정산계약	주식/채권의 수 × 기초 자산의 시장 가치
신용부도스왑	매입자: 기초 자산의 시가 매도자: 기초 자산의 시가 또는 신용부도스왑의 명목 가치 중 큰 금액
통화스왑	외국통화 계약의 명목 가치
금리스왑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토탈리턴스왑	기초하는 준거자산의 시가
선도	
선도금리계약	명목 가치
외환선도거래	외국통화 부분(foreign currency leg)의 명목 가치

2. 1.에 따라 산정된 가치가 불합리하거나 적용가능한 기준이 없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